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35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10. 15.
4. 회부일자 : 2021. 10. 20.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약칭: 조례)」의 제정 사유는 법령의 위임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부존재하여 학교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됨.

※ 최초 조례명: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2003년 제정)

- 최근 교육시설 조성,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의 전(全)단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제정 및 시행[2019.12.3. 제정(시행일: 2020.12.4.)]

- 학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구체화 및 강화된 교육시설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Ⅳ.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별첨 4]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3. 협 의 : 감사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담당관과 협의 완료

4. 기 타

가. 조례 기준 교육시설법 비교 [별첨 1]

나. 입법예고(2021. 9. 1. ~ 9. 23.) 결과 : 별도의견 없음

※ 서울시보(2021.9. 6. ~ 9. 27.) 게재 결과: 별도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폐지안으로 해당없음 (담당자 협의 완료)

라. 성별영향평가: 폐지안으로 해당없음 (담당자 협의 완료)

마.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3]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폐지조례안은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2935호로 제출되어 2021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폐지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이 지난 2019년 12월 3일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020.12.4 시행)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시설물 안전 조례’)」는 지난 2012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조례 제5286호로 제정되어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설치,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19년 12월 3일, 교육부에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을 제정하였고 동 법률은 전반적인 교육시설¹⁾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교육시설 정보관리 및 조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 그러나 「교육시설법」과 「시설물 안전 조례」의 조항을 비교·검토해보면([붙임] 참고), 「교육시설법」의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조항은 「시설물 안전 조례」의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적용범위(제3조)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학교급 및 설립유형 등에서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동 법률의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제8조),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제10조), 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제13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공개 등(제23조)은 동 조례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제4조), 안전기준의 설정과 고시(제5조),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8조)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 한편 동 조례 제7조제3항²⁾은 동 법률과 유사한 내용은 아니지만 같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5조³⁾의 내용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1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이하 ‘교육안전 기본조례’)」의 책

2)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시설물에 대해 반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분기마다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학교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정기점검 실시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3)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2. 교육시설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3. 교육시설의 장과 계약된 위탁 업체에 소속된 직원 또는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민간전문가

무(제7조), 안전교육실시(제11조)와 유사한바, 동 조례 중 안전교육 내용은 「교육안전 기본조례」에 흡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동 조례 제6조(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설치)는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교육시설 안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등을 운영 중으로 동 조례의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기한 유사 위원회 등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2021.7.1.기준)

	위원회명	설치근거	심의사항
1	교육시설 정책자문 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교육시설사업의 기본방향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사업의 예산, 집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 표준화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물의 개축여부 판정 및 건물재배치 등에관한 사항 - 재난위험시설지정, 해제, 관리 및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사항
2	재난위험 시설심의 위원회	- 교육부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 - 서울특별시교육청재난 위험시설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 재난 위험시설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재난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철거등에 관한 사항 -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 - 재난 위험시설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요구된 사항
3	교육안전 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 15조(교육안전위원회)	-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교육 안전강화를위한 조사,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 안전 관련 예산현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교육감이 교육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이필요 하다고 인정하는사항
4	기술자문 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제6 조	- 학교의 신축과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한 증축·개축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명	설치근거	심의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기술 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 에관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의 기본계획, 설계, 시공,유지관리, 학교건축 디자인에대한 한자문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6항 에 따른 새로운기 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 기된 사항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이와 같이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과 학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타 조
례에 이미 통합되어 시행중인바,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동 조례를 폐지하는
데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교육시설법」과 「시설물 안전 조례」 내용 비교

시설물 안전 조례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교 내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시설물, 2. 안전사고 3. 안전점검 4. 정밀안전진단 5. 안전교육 6. 유지관리	제2조(정의) 1. 교육시설, 2. 교육시설이용자 3. 교육시설의 장, 4. 감독기관 5. 교육시설안전사고, 6. 안전관리 7. 유지관리, 8. 안전점검, 9. 정밀안전진단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각급 시립학교	제2조(정의)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제4조(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그 실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조(안전기준의 설정과 고시) 교육감은 시설물의 세부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최소환경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① 육시설의 장

시설물 안전 조례	교육시설법
<p>각급 학교의 시설물에 대해 반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장은 분기마다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공개하여야 한다.</p>	<p>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공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②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p>
<p>④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정기점검 실시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p>	<p>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교육감 및 교육장은 안전점검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9조(학교시설물의 안전조치)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학교구성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교육시설이용자의 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시설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신속하게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2. 대체시설의 확보 3.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4. 교육시설의 사용금지 5. 교육시설의 철거</p>

시설물 안전 조례	교육시설법
제10조(학교시설물의 유지관리) 학교장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고, 교육시설이용자가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학교장은 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물 안전과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9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③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